

있고, 1993년에 유엔은 각국 정부에 국내 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법무부에 인권과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보다는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적 압력을 방어하는 일이 주요업무여서 독립된 인권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

인권위원회의 구성은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하고, 사무국 직원은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인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며, 인권위원은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공익적 시민단체(변호사회,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가 복수추천한 사람들 중에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대통령이 각 일정 수식을 지명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3년 정도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신분보장은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원과 같이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서는 임기 중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자율적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조직체계상 대통령 직속으로 하거나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하며 그 사무소는 중앙에 두고 고등법원 소재지 또는 각 광역 지방 자치단체에 분사무소를 두어 원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인권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인권침해 조사업무

인권위원회는 국민이 인권위원회에 청원한 국가기관 및 사적인 집단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적정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유용한 인권보장기구일 수 있다. 이것은 사법제도의 부패, 불공정, 권위주의를 견제하고 국민의 효과적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청원된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인권위원

회는 ① 관계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③ 감정의 의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거나 중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거부 후 최초로 열리는 국회에서 그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받아야 한다.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조사의 비협조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한 때, 관계 국가기관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즉각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자칫 관계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제도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그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떠한 집단의 행위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에게 적극적으로 계획과 조치를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때 관계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것을 거부할 시에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인권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거부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활동을 결산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특히 인권침해를 자주 하는 국가기관의 명단을 그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있고, 특히 문제되는 인

권침해적인 관행이 있을 때에는 그것의 시정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업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인권침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적절한 경우에 한하고, 특히 인권침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훨씬 적절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청원인에게 세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인권위원회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정부에 조언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활동

기존 법률, 국회에 제안된 법률 및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국제적, 국내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행정부에 제출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 인권분야에서 입법, 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인권관련 조약에 가입할 때, 인권관련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입안할 때,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기준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셋째, 인권을 증진시키는 활동

인권홍보와 교육, 인권존중의 가치 및 태도형성, 인권옹호 활동의 장려를 의미하며, 이에는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 및 수집배포, 학교에서의 인권과목 개설, 인권기념일 등의 행사를 주도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검사, 경찰관 등 법집행 공무원, 정부와 의회의 공무원, 사회운동가, 군인, 교사, 노동조합원, 사회지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인권 주제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활동 및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지원활동 등이 포함된다.

(4) 언론자본에 대한 통제방안 확충

언론은 현재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언론자본은 일개 기문이나 재벌의 소유⁸⁴⁾인 경우가 많고, 언론 내의 편집국은 독립되어 있지 못한 경우⁸⁵⁾가 많다. 때로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잘못된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민중들을 억압하는 기구로도 쓰이고 있다.⁸⁶⁾ 이러한 언론은 현재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전횡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언론자본의 횡포는 결국 시민들의 공식적 정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왜곡시키고 그 효과를 반감시킬 뿐더러 모든 영역에 걸쳐 표현의 자유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재벌들의 언론소유를 일절 금지시켜야 한다. 현재 IMF 사태를 맞아 재벌들이 신문사를 매각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나 자신들의 강력한 보호막인 신문들을 재벌들이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재벌들이 소유한 언론이 아닐지라도 언론자체의 족벌경영과 그 세습제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재벌들의 세습식

84) 재벌이 소유한 언론으로는 「중앙일보」(삼성), 「문화일보」(현대), 「경향신문」(한화)을 들 수 있고, 족벌의 소유인 신문은 「조선일보」(방웅모), 「동아일보」(김성수), 「한국일보」(장기영)를 들 수 있다.

85)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91년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던 김중배가 사주의 부당한 압력으로 사퇴하였고, 1994년에는 「문화일보」 백기범 편집국장이 사주의 마찰로 사임했으며, 1997년에는 「세계일보」 김영호 편집국장이 사주의 부당한 압력에 항의하다 2개월 만에 사퇴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손석춘,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p. 87 참조

86)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에 대하여 지극히 비우호적이었던 그들은 김대중이 당선되자마자 김비어천가를 불렀다.

족벌경영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이다.

셋째, 언론사의 편집국장과 같은 주요한 자리의 임명 또는 해임에 최소한 일반기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반론보도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언론사나 방송사가 듣지 않을 경우는 현재의 이행강제금 외에 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를 위하여 언론사와 방송사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법의 차원에서 본 목표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극우 반공체제의 보루이며 그 상징이기도 하다.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곧 이러한 체제를 개편한다는 것으로, 어쩌면 이것은 보다 큰 차원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 세력의 힘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효율적 전략·전술만 있다면 폐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⁸⁷⁾ 전술한 핵심조항의

87)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발짝 더 전진시켰으며, 1988년 형성된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심지어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조차도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정도이다. 다른 야당은 폐지가 당연히 당론이었다. 이것은 문익환, 서경원과 뒤이은 임수경의 방북으로 공안정국이 도래하면서 모두 물려버리고 당시 김대중의 평민당은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전술하였듯이 결과는

폐지 내지는 1990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명백현존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현실적 목표가 아닌가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한번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김대중과 김종필은 <국가보안법> 보완을 공동정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보완의 내용에 제7조와 제10조의 폐지 내지는 헌법재판소의 1990년 결정의 취지대로 명백현존의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당장 현안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자의적 금지통고 제도는 철폐되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금지통고를 다루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가처분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야 하고, 바로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취소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처벌조각 사유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정치관계법의 합리화

정치관계법은 전술했듯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⁸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비교적 합

1991년의 개악으로 나타났다. 1988년과 1989년의 방북이 통일운동에 얼마간 기여했을지는 엄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확대에 있어서 중대한 전술적 오류를 범한 것만은 틀림없다.

88) 헌법소원이 좋은 무기라고 생각된다. 비록 많은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판례변경의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론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대표적 예로는 <헌법>상 권한쟁의가 열거적이라는 1995.2.23. 90헌라1 결정에서 예시적이라는 1997.7.16. 96헌라2 결정으로 변화한 것 이 있다.

리적 논거로 정치권을 압박해 나간다면 일정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수단

무엇보다도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법 자체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기보다는 현존하는 세력의 역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 시민운동의 활성화

시민운동에 대한 불필요한 성격 논쟁을 떠나서라도, 시민운동은 국민 개개인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끊임없는 자발적 노력을 벌이는 것을 주 특징으로 한다. 시민운동은 여러 조류가 있어 그렇지 않은 성격의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합법공간을 넓혀줄 수 있고 사회를 보다 민주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과정을 통해 각성된 시민 개개인의 의식과 노력이 비록 미약해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위로부터의 쇼 같은 개혁보다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특수한 정치 사회적 경험 때문에(1980년대를 지칭한다) 다수의 양심적 시민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사회참여를 이를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시민사회를 강화하여 비공식적인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고 공식적 정치영역에 보다 강력한

참여와 압력을 통해 공식적 정치체계의 합리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강화

혹자는 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을 시민단체 혹은 시민운동의 범주에 넣기도 하나, 노동조합을 기초로 한 노동운동은 그 폭발성과 민주성⁸⁹⁾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운동으로 사회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운동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강화는 비공식적인 영역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뿐더러 공식적인 정치체계에 대해서도 폭발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한 운동영역이기는 하나 아직 노조조직률은 높지 않고 산별체제의 이행도 아직 실현되지 않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89) 여기에는 이의를 달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 대중에 깊이 뿌리박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 조합원 집행부가 매년 선거로 뽑히며 단체협약체결과 같은 중요사항의 경우는 총투표를 거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신임을 물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어느 조직보다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국민선거,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들 수 있는데 총투표는 일종의 국민소환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1998년 초의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대의원들은 지도부가 서명한 합의를 거부하였는데, 그것이 조직자체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직 내 지도부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민주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진보정당의 건설·강화

진보정당이 건설되어 그 힘이 강화되지 않으면 공식적 영역이건 비공식적 영역이건 표현의 자유의 확보는 쉽지 않다. 원래 표현의 자유는 항상 소외되고 억압되어 있는 자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있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진보정당의 건설·강화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 확보를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는 보다 큰 독립적인 과제일 수도 있다.⁹⁰⁾ 그러나 이것을 수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치영역은 상대적으로 합리화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영역보다는 위헌적인 법률이나 제한들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현행 체제상 정당은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그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 진보적 의식의 확산

표현의 자유는 전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운동의 참여자는 현재 다수가 아니다. 또 그

90) 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잇는 가교이고 양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권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를 접수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다른 조직도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시는 정당을 “현대의 군주”라고 칭한 것이다. Antonio Gramsci, *Quaderni del carcere*, 이상훈 역, 『옥중수고』 1, 거름, 1986, pp. 144-155 참조

운동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식적 각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좀더 낮은 의식의 확산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⁹¹⁾ 이를 위해서는 다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보운동권과 양심적인 시민세력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북한동포돕기 운동이나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한 통일문화재단 등은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V. 나오며

현재 우리의 사회적 조건은 과거에 비해 두 가지 변화된 점이 있다. 하나는 일부 경제관료의 무능과 금융산업의 취약성, 재벌제도의 비합리성으로 초래된 속칭 IMF위기와 50년 만에 이루어졌다 정권교체다. 지금 사회의 어느 구성원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우리 구성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전환점에서 있다면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주도한 사회운영계획과 방식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새로운 사회운영 방안이나 계획 등은 다수의 지혜

91) 이러한 점에서 대학사회에서 한총련의 지도력 상실은 치명적이다. 학생운동의 위상문제를 떠나서라도, 대학은 끊임없는 진보의 요람이었으며 많은 수의 양심적 시민과 진보적 인사를 길러낸 곳이기도 하다. 학생운동의 지도력 회복이 없다면 진보운동은 많은 수의 잠재적 지원군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1998년 2월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하로 학생운동의 부도덕성과 이적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신입생과 그 학부모에게 배포하였는데, 과거라면 이러한 행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설혹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반감만 생겼을 것이다. 한총련의 지도력 상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사건이다.

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론분열이나 총화단결 저해라는 우매한 수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문제의 본질을 분석할 수 있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되었을 때만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말이다.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잡기 위한 게임이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차대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고도의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로는 드물게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정기적인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그 누구든 최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상에도 부합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발 더 전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끄빌의 지적대로 선거가 노예에게 정기적으로 주인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⁹²⁾ 그것은 새로운 독재와 전제를 부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자체를 혐해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 국민들이, 주인이 아닌 충실향한 시종을 뽑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재임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항의·비판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⁹³⁾ 그러기

92)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translated by George Lawrence, edited by J. P. Mayer, Garden City, N. Y. : Anchor, 1969, 강정인,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문학과 지성사, 1993, p. 85에서 재인용. 또끄빌의 이 지적은 정말 의미심장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1987년 이후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노예가 정기적으로 주인을 선택한 것에 지나는 것은 아닌가.

93)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이 국민들과 대화한 것은 돋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균소한 득표차로 당선된 그에게 우호적인 이야기만 나온다는 것은 약간 놀라운 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법과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이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장하여 법의 형식성⁹⁴⁾을 통하여 모든 시민이 균일하게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수단, 조건의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양심적 법률가들이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호사 허현은 엄혹했던 일제시절 3.1운동 와중에서 검거된 33인 등을 변호하면서, 그 허점을 파헤쳐 '공소불수리'를 주장해 법원으로 하여금 인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일제 식민지 지배질서에 타격을 주고, 민족해방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⁹⁵⁾ 이와같이 과거 법률가들의 노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제도 이전에 문화적인 측면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고 차후의 연구과제다.

94) 문헌상의 형식성을 말한다. 법의 입법목적이 아무리 처분적이라 하더라도 법의 표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도와 관련 없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루지는 것으로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평등성이 아닌가 싶다. 포스피실은 법의 속성으로 권위의 속성, 보편 적용 의도의 속성, 권리·의무관계의 속성, 제제의 속성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두번째 속성이 보편적용 의도의 속성 때문에 법은 입법자와 지배자도 어느 정도 구속하는 힘을 지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언어적 평등성으로 나타난다. 포스피실이 주장하는 법의 속성에 대해서는 Leopold Pospisil, *Anthropology of Law : A Comparative Theory*, 이문웅 역, 「법인류학」, 민음사, 1992, pp. 75-168 참조

95) 일제 당국은 33인을 내란죄로 의을하려다가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보안법위반으로 의을하기로 하였는데, 전자는 고등법원 관할이고 후자는 지방법원 관할이었다. 그런데 고등법원 검사국은 관련기록을 사실상 지방법원 검사국에 송부하였을 뿐 법이 요구하는 절차인 이송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허점을 찾아낸 허현은 위 사건이 어느 법원에도 계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지금의 공소기각결정인 공소불수리를 주장하였고 지방법원은 할 수 없이 공소불수리 결정을 하였다. 다만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들은 석방되지는 못하였다. 심지연, 「허현 연구」, 역사비평사, 1994, pp. 35-40 참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Ronald H. Chilcote,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 정치사회학연구회 역, 『비교정치학 이론』, 한울, 1988.
- Antonio Gramsci, *Quaderni del carcere*, 이상훈 역, 『옥중수고』1, 거름, 1986.
- Eric Hobsbawm, *The Age of Extremes : The Short Twentieth Century*, 이용우 역, 『극단의 시대 : 20세기의 역사』(상)(하), 까치, 1997.
- Roy Medvedev, *Let History Judge :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talin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89(first published in 1971).
- Leopold Pospisil, *Anthropology of Law : A Comparative Theory*, 이문웅 역, 『법인류학』, 민음사, 1992.
- 강정인,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적 초상』, 문학과 지성사, 199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1-3), 역사비평사, 1992.
- 변정수, 『법조여정』, 관악사, 1997.
- 사법연수원, 『미국헌법론』, 1997.
- 손석춘, 『언론개혁의 무기』, 개마고원, 1998.
-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 신동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4.
- 심지연, 『허헌 연구』, 역사비평사, 1994.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2.
- 재정경제원, 『경제백서』, 1996.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id Hussain,

-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 김정진, 「민중정치와 의회정치의 출타기 - 민중당 당권파의 의의와 한계」, 『관악』 1994년 가을호.
- 교육부,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글」, 1998년 2월.
- 나현채, 「노동자의 정치 -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의 의의와 한계」, 서울대학교 교지 『관악』 1994년 가을호.
- 남궁호경, 「국가보안법의 해석론적 고찰」, 『대한변호사협회지』 1988년 9월.
- 박병섭,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9호, 관악사, 1995.
- 법무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보고서」, 1996년 7월.
- 신광영,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 정재황,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규정에 대한 합헌결정」, 『법률신문』, 제2435호 1995년 9월 14일자.
- 장원준, 「1년 만에 구속영장주도권 뒤바뀐 형사소송법 통과」 막전막후 - 검찰의 전격작전 대 법원의 사려방어 … 초유의 대충돌」, 『월간 조선』, 1998년 2월호.
- 정종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법과 사회』, 제4호, 창작과 비평사, 1991.
- 최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 『서울대학교 법학』, 33권 1호, 1992년 3월.
- 최대권, 「정치개혁을 위한 몇가지 생각」(II), 『서울대학교 법학』, 33권 2호, 1992년 9월.
- 하종대, 「『나는야 통일 1세대』는 이적서적인가?」, 『신동아』, 1998년 1월호.

장려상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

미군범죄 피해자 배상에 관한 연구

I. 머리말

대통령이든 미군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피해입은 이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 처벌과 배상이 철저히 이루어질 때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어쩌면 우리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간단한 상식마저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에 오늘날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는지 모른다. 분단의 세월은 우리에게 반쪽의 하늘과 땅과 이념을 심어주었다. 도심 한가운데 외국군대가 반세기가 넘도록 주둔하는 것을 자연스레 느낄 정도로 우리는 철저히 반쪽교육에 길들여지지 않았는가? 이남의 안전을 위해 주둔한다는 미군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는 범죄를 저질렀건만 문제의 해결은 아직 요원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적 스트레스 발생원인과 향후 사회변화 예측」이란 보고서(1998년 2월)에서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50년 간 계속된 남북한 대치, 3년 간의 군복무와 그에 따른 예비군 훈련, 인구파밀, 과다한 교통량과 대기오염 등을 뽑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상의 도피처를 찾는 '코쿠닝(Cocooning) 현상'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부대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현실을 기피하는 성향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다.

수상소감

소중한 '인권논문상'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다듬어지지 못한 논문을 용기내어 제출하게 된 것은 미군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였다. 비록 개인이 얹은 작은 논문이지만 그 글이 완성되기까지는 윤금이 써 사건부터 지금까지 미군범죄 최소화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위하여 애써온 많은 사람의 헌신이 뒤따랐다.

소리 없이 자원활동 해주신 분, 꾸준히 금요집회를 지켜주신 분,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고생하신 분, 시간 쪼개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안 만들어주신 분. 수상의 영광은 그분들의 것이다. 수많은 이의 헌신에 비해 나의 역량이 모자라 글이 너무 초라하게 정리되어 송구스러울 뿐이다.

끌으로 이런 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길러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논문 준비기간 내내 궂은 일 다 맡아가며 나를 배려해준 운동본부 김동심 씨, 박은주 씨에게 감사드리며 온갖 스트레스를 모두 감내해준 나의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을 수량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분단이 우리에게 주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그리워하면서도 실정법에 가로막혀 애를 태우는 이산가족을 차치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하고픈 말, 쓰고 싶은 글, 읽고 싶은 책, 보고 싶은 영화, 심지어 먹을 것이 부족한 이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조차 우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 없다. 남과 북이 갈라짐으로 인하여 이남에 사는 모든 이들의 일상적 행위에 이북을 이롭게 한다는(할 수 있다는) '재해석'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재해석은 여러 가지 금지행위와 갖가지 성역을 만들어내었다. 필자는 금지행위 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과 관련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반백년 이상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미군주둔으로 파생된 문제는 분단이 주는 스트레스 만큼이나 다양하다. 기지촌, 국제결혼, 혼혈아동, 공여지, 지뢰, 범죄, 환경오염, PX 미제물품, 군작전지휘권,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한미 상호 방위조약>, 방위비분담금, 미군전용술집에서 일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필리핀 여성들까지 정말로 여러 사안들이 주한미군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미군범죄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미군범죄 피해자의 배상문제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¹⁾ 제23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현행 협정의 문제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한미행정협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행정협정'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없이 체결한 약식조약이다.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협정을 우리가 '행정협정'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행정협정'이란 말은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행정협정'이란 모호한 표현보다 '주둔군지위협정'

점과 개정방향을 사례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하버드대 GKR의 핸더슨 한국문제연구가는 그의 논문 「주한미군 작전지휘권의 정치적 위험요소」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²⁾

1950년 7월 15일 서울에서 급히 체결된 이 협정은 체결과정 자체부터가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않았던 분노를 자아내게 할 요소로 가득 차 있다. … 주한미사령관을 지냈던 스틸웰 장군은 이 협정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묘사했다. …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써주었다는 작전권 이양에 대한 편지는 명백히, 완전히 그리고 모두 미국이 초고를 잡아준 것이다.

이렇게 작전지휘권을 얻게 된 미군은 1953년 한미간의 방위조약을 체결, 주둔근거를 마련하였다.

1953년 10월 워싱턴에서 서명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4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受諾)한다.

외국군의 한국주둔을 협정화한 것은 1904년 일본의 강요에 의해 굴

(이하 지위협정)이라 일컫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2) 오연호,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말라」, 백산서당, 1990, p. 298.

목적으로 체결된 “한일의정서” 이후 처음이다(한일의정서 제4조에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수용(隨機收用)할 권리가 일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母法)이 된다.

2. 변천과정

가.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은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다.³⁾ 이는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지자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어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된 이 협정은 1949년 미군정이 끝나면서 미군이 철수하자 종료되었다.

나. <대전협정>

미국은 한국전쟁중인 1950년 7월 15일 한국군에 대한 군작전지휘권을 ‘노획’하고 나서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 미군을 다시 주둔시켰다. 미군이 진주하게 되자 미국의 요구

3)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4, p. 9.

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협정>(주한미국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이 전시(1950년 7월 12일) 중에 각서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어 1952년 5월 24일 한국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이어협정>(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전협정>은 미군 및 미군속에 대하여 미군당국에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과 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크게 침해한 가장 후진국형 협정이었다.

다. 1967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때부터 한국은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대전협정>, <마이어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측의 회피로 계속 지연되었다. 그 후 주한미군의 탈선과 범죄로 한국여론이 들끓게 되자 비로소 미국은 협상에 응하였고, 1966년 7월 9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상과정만 13년이 걸린 이 협정의 체결대가로 미국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과 <한일협정> 체결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1967년 2월 9일 발효된 지위협정은 이전의 <대전협정>과 별다른 차이 없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그대로였다.

라. 199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1967년 지위협정이 체결되던 당시에는, 대대적인 과장선전과 당시 지배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하여 협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체결 자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수

많은 범죄는 끊이지 않아 또 다시 지위협정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한미양국은 1991년 1월 4일 지위협정의 1차 개정에 합의하였다 (동년 2월 1일 발효). 1991년 개정은 제22조 형사관할권 중에서 한국 재판권 자동포기 조항의 삭제 등 부분적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차 개정은 협정본문과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 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은 폐기하고, 이 두 개의 문서를 새로운 합의 양해사항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했다.

지위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약의 복잡한 형식이다. 주둔군지위협정은 본 협정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세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부속문서를 이용하여 복잡하게 규율한 것은 당시 협정체결 교섭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

1992년 10월 윤금이 씨 살해사건을 비롯, 1993년 로저 병장의 김국혜 씨 성폭행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미군범죄가 계속되자 지위협정 개정요구가 빛발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미양국은 지난 1995년 11월 30일부터 1996년 9월 10일까지 7차에 걸친 개정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미군피의자 인도시기, 기소시점, 검찰상소권, 미군피의자의 반대신문권,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등 형사재판권 관련 문제에 이견을 보여 절충에 실패하였고, 8차 협상 날짜도 잡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되었다. 더구나 7차 협상이 열리기 3일 전 동두천에서 이기순 씨가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에게 목이 질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한국정부는 미국측에 항의성명 한 장 내지 못하였고, 개정회담마저 미국의 고압적 태도에 밀려 미궁으로 빠져들었다(외무부 협상실무관료들은 현행 협정이 별 문제가 없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내어줄 것이 없다. 미군이 철수하면 어찌나는 입장을 고수하였을 뿐이다).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표류하던 개정협상은 1997년 5월 27일 미국측이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올해는 SOFA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통보를 해옴에 따라 사실상 중단되고 말았다.⁴⁾

이에 반해, 1995년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해 초등학생이 성폭행당했을 때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와 군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주일미군사령관, 주일미대사,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를에 걸쳐 '주일미군 반성의 날'을 정하고 훈련을 중지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미일협정>을 부분적이나마 개정시키는 외교력을 보였다.

다음에서 제기할 지위협정 제23조 청구권조항은 1991년 협정 개정 당시 양해사항을 개정할 때도 변화가 없었으며, 1995년 11월에 시작된 개정회담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청구권조항에 문제점이 없어서가 아니다. 협정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기에 허술한 조항과 불합리한 규정들이 많다. 다만 배상절차가 복잡하고 배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패배감,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미군문제 제기 자체를 금기시하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배상청구를 기피하는 바람에 청구권조항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III. 범죄실태와 처리현황

미군범죄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주한미군의 역사는 미군범죄의 역사"라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1945년 미군주둔 이후 현재

4) 『경향신문』, 1997년 5월 29일자.

까지 10만 건이 넘는 미군범죄가 발생하였다. 지위협정이 발효된 1967년부터 1993년까지 일어난 미군범죄는 총 4만 6,236건이다. 1940, 50년대에는 강력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한국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에 입건된 공식적인 통계이다. 미군기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 특히 여성의 경우 범죄를 당하고도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훨씬 더 심각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연평균 1천여 건으로 미군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유형도 폭력과 교통사범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주한미군 병력이 3만 7천여 명으로 감축된 것,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반미의식' 확산되었다는 것과 관계가 깊다. 또한 1992년 10월 윤금이 써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가 결성되어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것도 주된 원인이 된다.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은 다음의 통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표 1-1> 19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범죄 처리결과⁵⁾

| 구분 연도 | 계 | 한국 1차 관할 | | | 한국관할 | 미국관할 |
|----------|--------------------|----------------|----------|----------------|------------|------------|
| | | 계 | 행사 | 포기 | | |
| 67년 | 건 1,710 명 2,029 | 1,594 1,910 | 8 16 | 1,586 1,894 | 42 42 | 74 77 |
| 68년 | 건 1,751 명 2,042 | 1,556 1,839 | 14 16 | 1,542 1,823 | 88 92 | 107 111 |
| 69년 | 건 1,798 명 2,003 | 1,617 1,814 | 10 11 | 1,631 1,813 | 83 87 | 39 40 |
| 70년 | 건 1,763 명 1,954 | 1,641 1,827 | 10 14 | 1,631 1,813 | 83 87 | 22 22 |
| 71년 | 건 1,756 명 2,239 | 1,605 2,086 | 18 29 | 1,587 2,057 | 129 131 | 16 16 |

5) 『주한미군범죄백서 : 민족의 주인됨을 위하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7, p. 102.

| | | | | | | |
|-----|--------------------|----------------|----------|----------------|------------|----------------|
| 72년 | 건 2,030 명 2,555 | 1,866 2,384 | 21 34 | 1,845 2,350 | 148 155 | 11 11 |
| 73년 | 건 2,001 명 2,462 | 1,806 2,237 | 13 24 | 1,793 2,213 | 184 214 | 12 12 |
| 74년 | 건 2,003 명 2,388 | 1,786 2,153 | 20 33 | 1,766 2,120 | 205 223 | 13 13 |
| 75년 | 건 2,383 명 2,708 | 2,070 2,366 | 18 29 | 2,052 2,337 | 300 329 | 12 12 |
| 76년 | 건 2,261 명 2,557 | 1,953 2,242 | 14 23 | 1,949 2,219 | 286 303 | 4 4 |
| 77년 | 건 2,042 명 2,351 | 1,847 2,140 | 12 15 | 1,835 2,125 | 191 207 | 0 0 |
| 78년 | 건 2,225 명 2,623 | 2,021 2,400 | 19 31 | 2,002 2,369 | 204 223 | 283 323 |
| 79년 | 건 1,905 명 2,121 | 1,464 1,638 | 12 16 | 1,452 1,622 | 158 160 | 1,678 1,878 |
| 80년 | 건 1,679 명 1,879 | 0 0 | 0 0 | 0 0 | 1 1 | 2 3 |
| 81년 | 건 1,783 명 1,975 | 1,588 1,754 | 4 5 | 1,584 1,749 | 193 218 | 0 0 |
| 82년 | 건 1,853 명 2,052 | 1,659 1,844 | 9 13 | 1,650 1,831 | 194 208 | 1 1 |
| 83년 | 건 2,079 명 2,268 | 1,756 1,939 | 6 7 | 1,750 1,932 | 322 328 | 0 0 |
| 84년 | 건 1,853 명 2,019 | 1,541 1,698 | 7 7 | 1,534 1,691 | 312 321 | 0 0 |
| 85년 | 건 1,709 명 1,847 | 1,398 1,528 | 7 11 | 1,391 1,517 | 311 319 | 0 0 |
| 86년 | 건 1,459 명 1,563 | 1,205 1,302 | 7 11 | 1,198 1,291 | 254 261 | 0 0 |
| 87년 | 건 1,409 명 1,548 | 1,171 1,303 | 5 6 | 1,166 1,297 | 261 245 | 0 0 |
| 88년 | 건 1,510 명 1,615 | 1,266 1,363 | 6 6 | 1,260 1,357 | 243 251 | 1 1 |
| 89년 | 건 1,332 명 1,427 | 1,117 1,197 | 10 12 | 1,107 1,185 | 211 226 | 4 4 |
| 90년 | 건 1,180 명 1,296 | 974 1,070 | 9 13 | 965 1,057 | 202 222 | 4 4 |
| 91년 | 건 1,206 명 1,339 | 1,041 1,158 | 14 18 | 1,027 1,140 | 163 179 | 2 2 |

| | | | | | | | |
|-----|---|-----|-----|----|-----|-----|---|
| 92년 | 건 | 754 | 642 | 10 | 632 | 112 | 0 |
| | 명 | 849 | 725 | 10 | 715 | 124 | 0 |
| 93년 | 건 | 802 | 624 | 13 | 611 | 178 | 0 |
| | 명 | 927 | 721 | 21 | 700 | 206 | 0 |

<표 1-2> 미군당국에 인도된 사건의 처리 후 결과 통보내역(1990년 기준)

| 죄명/구분 | 처 리 결 과 | | | | | | | | |
|---------|---------|-----|-----|-----|-----------|----|----|----|-----|
| | 무협의 | 주의 | 견책 | 강동 | 불명예 제대 | 구류 | 징역 | 기타 | 계 |
| 강간 | | | | 1 | | 1 | | | 2 |
| 사기 | | | | 1 | | 2 | | | 3 |
| 절도 | | 3 | 8 | 8 | | 3 | | | 22 |
| 뇌물수수 | | | | | | 1 | | | 1 |
| 재물손괴 | 5 | 6 | 6 | 2 | | | | | 19 |
| 통화위조 | | | | 1 | | 1 | | | 2 |
| 폭력행위 | 1 | 61 | 32 | 64 | 3 | | 1 | | 162 |
| 관세법위반 | | 13 | 9 | 16 | 7 | 3 | 20 | | 68 |
| 향정신성의약품 | | | 3 | 2 | 2 | | | | 7 |
| 관리법위반 | | 241 | 108 | 8 | | | | | 357 |
| 도로교통법위반 | | 10 | 4 | 4 | | 1 | | | 19 |
| 특례법위반 | | | | | | | | | |
| 계 | 1 | 333 | 170 | 109 | 16 | 3 | 30 | | 662 |

한국측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이든 미국측의 전속적 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든, 대한민국 및 국민에게 피해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 미군당국의 자체 내 사건처리가 지나치게 관대하다. 법무부가 199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밝힌 위의 자료에 따르면, 미군당국에 인도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가운데 징역형을 언도받은 것은 1990년도 총 333건 중 30건, 1991년 총 733건 중 8건, 1992년도 1-8월까지 총 335건 중 불과 6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견책으로 처분되었다.

<표 1-3> 연도별/죄목별 SOFA 대상자 범죄발생 건수, 재판권 현황

| 행사율 | 범죄 구분 | 총계 | 미 군 | | | | | | | 미군 속가 족 등 |
|------|---------|-------|-------|-------|-------|--------|-------|------|------|-----------|
| | | | 강력 사건 | 교통 사고 | 폭력 행위 | 관세법 위반 | 절도 | 기타 | 소계 | |
| 1991 | 발생건수 | 1034 | 6 | 635 | 198 | 23 | 33 | 37 | 932 | 102 |
| | 재판권 행사 | 116 | 6 | 1 | 7 | 0 | 0 | 0 | 14 | 102 |
| | 재판권 행사율 | 11.2% | 100% | 0.1% | 3.5% | 0% | 0% | 0% | 1.5% | 100% |
| 1992 | 발생건수 | 754 | 5 | 446 | 134 | 7 | 31 | 19 | 642 | 112 |
| | 재판권 행사 | 122 | 5 | 1 | 3 | 1 | 0 | 0 | 10 | 112 |
| | 재판권 행사율 | 16.2% | 100% | 0.2% | 22% | 14.2% | 0% | 0% | 1.5% | 100% |
| 1993 | 발생건수 | 802 | 5 | 428 | 129 | 10 | 31 | 21 | 624 | 178 |
| | 재판권 행사 | 192 | 5 | 1 | 5 | 2 | 0 | 0 | 13 | 178 |
| | 재판권 행사율 | 23.9% | 100% | 0.2% | 3.9% | 20% | 0% | 0% | 2.1% | 100% |
| 1994 | 발생건수 | 896 | 4 | 515 | 133 | 8 | 26 | 25 | 711 | 185 |
| | 재판권 행사 | 203 | 4 | 4 | 8 | 0 | 1 | 2 | 18 | 185 |
| | 재판권 행사율 | 22.7% | 100% | 0.8% | 6% | 0% | 3.8% | 8% | 2.5% | 100% |
| 1995 | 발생건수 | 903 | 3 | 490 | 133 | 13 | 32 | 23 | 694 | 209 |
| | 재판권 행사 | 250 | 3 | 5 | 26 | 1 | 4 | 2 | 41 | 209 |
| | 재판권 행사율 | 27.7% | 100% | 1.0% | 19.5% | 7.7% | 12.5% | 8.7% | 6.0% | 100% |

<출처 : 법무부>

※ 강력사건 : 살인, 강간치사, 특수강도, 강도상해 등

※ 1996년 1-6월 기간 중 전체사건 발생건수 : 360건, 재판권 행사 : 104건,

재판권 행사율 : 28.8%임

미군에 의한 범죄발생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2년에는 가장 두드러진 감소현상을 보여 1982년의 39.2%에 불과하다. 이는 1992년 10월 동두천에서 윤금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케네스 마클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깊다.

미군범죄를 죄명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가 30% 내외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40%를 넘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로 바뀌었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

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는 큰 변동이 없으나 15-20% 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표 1-4> 미군인 범죄의 죄명별 발생원인(1982년-1992년)

| 연도 | 합계 | 증감률 | 도로교통법 | 폭력행위 등 | 교통사고 특례법 | 관세법 위반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기타 |
|------|------------------|-------|---------------|---------------|---------------|---------------|----------------|--------------|
| 1982 | 1,849 (100.0) | 100.0 | 331 (17.9) | 566 (30.6) | 289 (15.6) | 296 (16.0) | 87 (4.7) | 175 (9.5) |
| 1983 | 1,903 (100.0) | 102.9 | 379 (19.9) | 607 (31.9) | 315 (16.8) | 319 (16.8) | 65 (3.4) | 109 (5.7) |
| 1984 | 1,644 (100.0) | 88.9 | 411 (25.0) | 525 (31.9) | 235 (14.3) | 235 (14.3) | 53 (3.2) | 106 (6.4) |
| 1985 | 1,445 (100.0) | 78.2 | 406 (28.1) | 403 (27.9) | 283 (19.6) | 179 (12.4) | 51 (3.5) | 80 (5.5) |
| 1986 | 1,240 (100.0) | 67.1 | 415 (33.5) | 422 (34.0) | 249 (20.1) | 41 (3.3) | 36 (2.9) | 40 (3.2) |
| 1987 | 1,174 (100.0) | 63.5 | 383 (32.6) | 397 (33.8) | 253 (21.6) | 30 (2.6) | 18 (1.5) | 48 (4.1) |
| 1988 | 1,285 (100.0) | 69.5 | 463 (36.0) | 409 (31.8) | 247 (19.2) | 39 (3.0) | 37 (2.9) | 33 (2.6) |
| 1989 | 1,172 (100.0) | 63.4 | 454 (38.7) | 281 (24.0) | 250 (21.3) | 65 (5.5) | 41 (3.5) | 38 (3.2) |
| 1990 | 1,048 (100.0) | 56.7 | 473 (45.1) | 255 (24.3) | 186 (17.7) | 54 (5.2) | 19 (1.8) | 31 (3.0) |
| 1991 | 1,044 (100.0) | 56.5 | 478 (45.8) | 280 (26.8) | 159 (15.2) | 26 (2.5) | 32 (3.1) | 17 (1.6) |
| 1992 | 725 (100.0) | 39.2 | 318 (43.9) | 183 (25.2) | 128 (17.7) | 18 (2.5) | 10 (1.4) | 24 (3.3) |

<표 1-4>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군의 <관세법> 위반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군인의 <관세법> 위반은 연간 300명 전후로 발생했으나 1990년대 이후 50명 이하로 급격히 적어졌다. 이는 국산 전자제품의 질이 우수해지고 수입자유화로 인해 미군이 밀수한 외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군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률도 완만하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요컨대, 미군범죄는 1982년 이래 계속하여 그 발생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죄명별로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관세법> 위반과 같은 범죄의 발생이 줄고 상대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의 발생률도 감소하고 있어 미군범죄의 위험성은 1980년대 초반에 비해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

IV. 미군범죄의 발생원인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미군범죄는 주둔 초기부터 형성된 미군들의 우월의식과 점령군적인 태도, 굴욕적인 한국정부의 대응,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원협정>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1. 주한미군의 문제

미군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주한미군 주력 미2사단의 표어가 “출생은 우연(Live by Chance), 사랑은 선택(Love by Choice), 살인은 직업(Kill by Profession)”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군들 중 상당수가 빈민가 출신이고,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이승만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미국인 로버트 올리버는 남한주둔 미군 3만명 중 2천명은 불량배라고 말하였다. 미국의 자유기고가 케빈 헬드먼은 주한미군을 가리켜 미국 사회의 온갖 무능력자들과 범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이라고 1997년 9월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런 미군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것은 미군 범죄자를 대하는 미군당국의 태도다. 위의 표에 소개된 것처럼 미군당국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처벌받아야 할 미군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해정적 징계로 처리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군범죄에 의한 한국인의 피해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다.

1992년 10월 동두천에서 미군 케네스 마클에 의해 윤금이 씨가 살해당하였을 때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리스카시(Robert W. Riscassi)는 한마디 사죄 없이 다음과 같이 당당히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일환으로서 미군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이상에 달하는 우리의 우방 관계를 통하여 실로 수십만 명의 미군들이 대한민국의 방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과 가정을 떠나 이곳에 왔으며…

미군들은 한국인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고 있다는 우월감과 지배의식으로 한국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며 잔혹한 범죄를 일으킨다. 미군범죄 근절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가진 금요집회 때마다 만나게 되는 미군들의 태도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170회가 넘는 금요집회를 바라보는 미군들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윤금이 씨의 피묻은 사진을 비롯 미군범죄 피해자 사진과 영어설명을 보면서도 손가락질하며 연신 “Fuck you”를 외치는 미군, 한국인들도 미군 폭행한다며 분개하는 미군, 심지어 한국말로 바보, 빨갱이라고 소리치는 미군도 있다. 미국 주요관리들의 다음과 같은 입장은 미군 범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잘 나타낸다.

1995년 5월 충무로 지하철 미군 난동사건 등 미군범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페리 미국방부장관은 “우리는 한미관계에 비판적인 한국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밀하였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에서 미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미군의 사소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확대시키는 집단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내에서 미군들이 훈련할 때는 항상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 요원이 함께 다닌다. 그들은 군사기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군에 의해서 자행되는 환경보호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쓰레기 하치장에서 위험물질 저장방법이나 사용까지도 간접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군대가 요구에 불응하면 민간 기업처럼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된다. 미국 내의 군대는 아주 모범적으로 자연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PA요원은 훈련 전에 환경보호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작전지역에 사는 희귀생물의 소개도 덧붙인다. 그리고 작전중에도 EPA직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심할 경우 꺾어진 나뭇가지와 죽은 곤충과 야생동물의 숫자를 일일이 적어 기록할 정도다.

미국은 그들의 국토환경을 군사훈련 중에도 보호한다. 그래서 미군은 큰 폭격연습이나 군사훈련을 미국 내에서 하지 않는다. 그러한 미군들이 한국에서는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강원도 태백산 등지에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극동지역 미공군들의 폭격훈련을 해댄다. 미군에게 제공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위협정의 규정 때문일까? 미군들은 한국에서 멋대로 행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1998년 2월 수락산 바위에 미군들이 써놓은 낙서는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대변한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근무하는 미군들이 수락산 바위에다 스프레이로 부대의 이름과 병사들의 이름, 부대 상징 마크를 그려넣었다. 갖가지 스프레이 낙서로 온통 흥물스럽게 변해버

린 수락산 바위들은 미군범죄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고통스런 모습이며 한미관계의 현주소다.

2. 한국정부와 수사기관의 문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낮은 재판권 행사율은 미군범죄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 재판권 행사에서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검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건이 경미하다 하여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면 당연히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미군의 소행이면 어느덧 경미한 사건이 되어버린다. 국내의 흉악범들이 법정최고형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군들은 우방국 군인이라는 명분 아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이것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 군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깊다. 미국이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문제다.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되도록 은폐,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많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는 미군범죄 전담반이 없다. 미군범죄자를 조사할 만큼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부족하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초등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미군들이 미군당국에 인계되는 경우가 많다. 미군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특히 미군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대할 때는 미군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미군하고 어울렸느냐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기

지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신고를 거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심지어 미군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미군을 고소하자 피해자에게 너 원래 처녀였느냐고 폭언하는 경찰도 있었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한국인만 귀찮게 한다는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다. 실제로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미군이 처벌도 되지 않고 피해자가 배상받기도 어려운데 뭐 하러 신고하나는 푸념을 들을 때가 많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설명할 때 그들의 분노는 금세 다가온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런 법을 여태 고치지 않고 있느냐는 말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미군범죄 신고를 받으면 뚱뚱았다고 표현하는데 운 나쁘게 걸려 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차원에서 미군범죄에 대해 적극적 문제제기가 부족하고,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협정과 여러 불평등조약들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미군범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1995년 2월 27일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에서 한국경찰청에 전달한 협조공문은 미군범죄에 대한 미군과 한국경찰의 관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박일룡 씨가 전 경찰청장 재임시절에 받은 아래 공문은 일선 파출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신 : 각 파출소, 각 경찰서 수사과, 형사과

제목 : 한미연합군사령부 협조사항 시달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 주한미군 사령부 및 한미연합군 사령부, 장병, 미국인, 한국인 군무원에 관한 인적 사항과 소속 부대명, 사고원인 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도매체에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지 않은바, 차후 사건, 사고와 관련한 주한미군, 연합사 요원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협조요청 부서 :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

2) 협조요청 내용

-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정보는 어떠한 보도매체의 요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공보실(전화:7913-4668)에 문의하고 난 후 제공할 것
- 개인정보의 내용은 이름, 계급, 부대, 나이, 인종, 눈과 머리카락 색상, 몸무게 등임
- 사건, 사고 당시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 요원의 임무나 활동을 언급하지 말 것
-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을 추정하여 명시하지 말 것
- 참고 : 주한미군공보실(전화:7913-4668)

3.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한미 SOFA)

현행 협정 중 한미간 개정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제22조 형사관할권 일부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한미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관할권'과 한미 양국이 다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측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사법권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나. 형이 확정되어 한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지 미군측에 인계될 수 있다.

본 협정 제22조 7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 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수감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미군을 굳이 미군측의 적당한 구금시설에 구금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는 한국인 피해자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미군기지 안을 미군들의 인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의 조항은 미군측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이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다. 범죄 미군의 구속수사는 불가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끝난 후 구속 수감된다

본 협정 제22조 5항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정대상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을 행하고 재판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는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요청할 경우 미군당국은 “인도할 수 있고” 특정사건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를 안해도 무방하다. 반면, 피의자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군측이 요청하면 우리의 의사나 사건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인도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한 내용이다.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미군당국에 구금 토록 하고 있어 피의자의 자유로운 조사, 접견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 수사당국과 법원이 수사와 증거수집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미

군피의자가 영내에 숨어버리는 경우에 그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

한국인 여성을 흥기로 찌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속이 실형선고 직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1995년 4월 13일 발생했다. 이 날 서울지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미군속 제임스 케이 리가 선고 직후 민간인 여권을 이용 미국으로 도주했다. 제임스는 선고공판 당일에도 미군 현병의 호송을 받으며 돌아갔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끝나기 전에 한국측이 구속하지 못하는 위의 조항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윤금이 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케네스 마클은 1992년 10월 28일 범행을 저지르고 1994년 5월 17일에서야 한국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였다. 모든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다.

라.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합의의사록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번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않을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받지 아니하는 권리,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미군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미군부대 내에서 한국 택시 운전기사가 미군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확한 수사나 물증도 없이 함부로 수갑채우고 연행하는 미군들

의 태도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는 제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미군범죄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가로막는 제23조 민사청구권,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을 제약한 제17조 노무조항 등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한마디로 미군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미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법대로 하자’다.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기에 미군에게 크게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V.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제23조 청구권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공무집행중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절차

가. 규정내용

본 협정 제23조 5항에는 공무집행중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대한민국 군인이 공무집행중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우리나라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민시특별법> 제2조 2항).

또한 5항 (마)에는 손해의 책임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 명시되어 있다.

본 협정 제23조 제 5항 (마)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당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나. 사례

(1) 최종우, 최재천 씨 교통사고

1993년 12월 18일 오전 7시 파주군 법원읍 갈공리 큰길에서 평안운수 소속 버스가 미군용 트레일러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군 트레일러가 불도우저를 싣고 내리막길을 질주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버스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최재천 씨와 교대기사 최종우 씨가 중상을 입었고, 몇몇 승객들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핸더슨 병장은 차량을 놓아둔 채 달아났으나 이 후 붙잡혀 과실을

시인하였다. 최종옥 씨는 늑골과 팔이 부러지는 중상으로 전치 16주의 진단을 받았고, 최재천 씨는 입원치료 2주, 통원치료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산재처리가 된 최재천 씨의 경우와는 달리 최종옥 씨는 교대 기사였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아 병원비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군측에서는 공무수행 중의 사고였으므로 한국정부도 25%의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심의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치료비를 선지급할 수 없다 하여 당장 병원비가 급한 최종옥 씨는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2) 미군 현병대의 세 모녀 감금·폭행사건

1994년 10월 25일 서울 한남동 한남빌리지(외인주택)에서 한국인 세 모녀가 미군 현병대에 의해 폭행·감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 설은주(40) 씨가 살고 있는 외인주택을 막내딸 설은주(30) 씨와 함께 방문했던 김금순(68) 씨는 외인주택 정문을 나서던 중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미 현병들에게 연행되었다.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찹쌀과 쇠고기를 문제삼은 것이다.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건장한 미군현병 4명이 칠순이 다된 김금순 씨를 가운데 두고 중죄인 다루듯 하였다. 김씨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말도 안 통하는 그들에게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설은주 씨가 항의하자 미군현병은 폭언을 하며 설씨의 오른쪽 팔목을 뒤로 비틀어 꺾어 수갑채웠다. 이 과정에서 팔목에서 피가 나는 등 전치 10일의 부상을 입었다. 설은주 씨가 이에 항의하자 현병 네 명이 무더기로 달려들어 팔을 꺾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세 모녀는 용산 미8군 현병대로 끌려가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때 김금순 씨가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혼절하여 쓰러졌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소변까지 보게 되었다. 현병들은 응급조치는커녕 손가락질하며 조롱하였다. 현병들은 세 모녀에게 잘못이 없음이 드러나자 연행 5시간 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다. 한국검찰은 이 사건을 공무 수행을 벗어난 범죄로 규정,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 1994년 10월 말 미군측에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설은주 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1996년 3월 28일 선고공판에서 “미군측이 김씨 모녀를 감금·폭행한 것은 공무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인 만큼 국가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발생 1년 5개월 만이었다.

(3) 전곡 이순자 씨 교통사고

1997년 7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동호다방 앞에서 노점상인 이순자 씨는 미 2사단 소속 페나 데즈 루이스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쓰러졌다. 미군의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당시 페나 데즈 루이스는 훈련중이었다. 이순자 씨는 발과 어깨의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 일대의 5일장을 돌아다니며 강냉이 장사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이순자 씨는 하루하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차 바퀴에 치여 터진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는 상태인 이순자 씨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입원 3일 만에 퇴원하고 말았다. 배상 절차를 마칠 때까지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에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업에 쫓기던 이씨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배상을 포기하였다.

다. 문제점과 개정방향

첫째, 우선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라 해도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미군이 반세기 이상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것은 ① 제2차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이 해방되었고, ②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남한을 도와주었으며, ③ 이북의 전쟁도발에 대해 전쟁억제력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단과 독재정권과 미국의 이익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다양한 반북·반공 이데올로기를 생산한 것과 관계가 깊다.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군의 주둔목적은 이북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즉 한반도의 안전보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냉전은 와해되었을 뿐 아니라 미군의 주둔목적도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도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미국측의 공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보를 위해 주둔한다. 문제는 현행 지위협정이나 협정의 모범이 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어디에도 미군이 이남에 주둔하는 목적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협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명시함으로서 주둔목적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동조약 제4조에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미군의 주둔권리만 나타나 있을 뿐 주둔의 목적,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조약 당사국 상호간의 주권존중과 평등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국제관례에 어긋난 불평등조약이다. <미일조약>에는 “일본의 안전과 극동에 있어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라고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중조약>에도 “체야국의 방위를 위하여”라고 주둔목적을 밝히고 있다. 동조약대로라면 미국이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있어 이를 통보할 때 한국은 이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조항은 더욱 문제가 된다. 합의의사록(제3항 (가))에 관하여에는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군이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합중국 군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공무집행증명서 발급 자체가 미군장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일본의 경우 공무중의 범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일본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그런데 공무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도 무조건 배상금 25%를 부담한다는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이남의 안보를 위해서만 주둔한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잘못된 조항이다.

미군의 주둔목적과 공무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무조건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의

조항은 한국측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치료비 선지급을 외면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미군들에게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의 규정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손해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조건 균등분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이 조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이남의 방위를 위해서 주둔한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일방책임이거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어떻게든 상대방의 책임을 끄집어내려 할 것이고, 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배상액을 균등분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버린다. 한·미간의 역학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 규정은 주로 미국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서 만약 쌍방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비율별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 책임소재나 책임비율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견해를 달리한다면 본 협정 제23조 2항, 3항에 명시된 대로 중재인이 판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셋째, 공무집행중에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는 일단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 한국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상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배상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그 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나중에 가서 결국 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치료비만이라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

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배상법>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된 예가 없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중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나 긴급히 필요 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공무와 관계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미군측이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예가 있다(1993년 4월부터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군들은 여론이 미군측에 불리하게 조성될 경우 치료비를 선지급하여 사건의 초기진화에 나선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자의 상황이 어려워도 여론이 잠잠할 때에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급한 것인지 <한미행정협정>에 관계규정이 있어서 선지급한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선지급 관행을 공무집행중 또는 공무집행과 관계 없는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규정해야 한다.

넷째, 대부분 공무중의 사고로서 빈발하고 있는 미군차량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들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주므로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설사 공무집행과 관계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비 보증은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⁶⁾

6) 장주영, 「민사청구권 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 문제점과 개정방향』, p. 27.

2. 공무집행과 관계 없이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절차

가. 규정내용

본 협정 제23조 6항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 제외)의 공무집행이 아닌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는 대한민국이 배상액을 사정해서 미군당국에 통보하면 미군당국에서 배상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검찰청 산하 국가배상심의회에서 배상액 산정→미 배상사무소에 통보→미 배상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최종통보).

미군당국이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손해에 대한 청구 역시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민사특별법> 제4조).

나. 사례

(1)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 씨가 피살되었다. 알몸으로 발견된 윤씨의 자궁에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고 항문에는 우산대가 직장까지 꽂혀 있었다.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으로 얼룩져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신에 하얀 합성 세제가루를 뿌렸다. 사건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힘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시체부검증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통하여 범인 케네스 마클은 검거되었다. 1994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그 해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윤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1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유족이 배상청구한 금액은 3억원)했으므로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5년 4월 29일 3심에서 기각,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다.

(2) 존 병장의 김국혜 씨 성폭행 사건

19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레베크’를 경영하고 있던 김국혜(53) 씨는 미 2사단 소속 존 로저 살로이스(27) 병장에게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뇌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로저 병장은 ‘파리야 깡통’과 주먹과 발로 피해자가 정신을 잊을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구타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였다.

김씨는 1994년 2월 2억 8,322만 5,340원을 국가배상 신청하면서 “국가는 로저 병장을 대신해 본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4,624만 4,853원을 산정하여 미군측에 통보하였고 미 배상사무소에서는 3,890만원을 지급했다(이 중 치료비 명목으로 선지급한 돈은 2천만원). 김씨의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넘었고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한 상태다.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 이를 키우며 근근히 가계를 꾸려가던 그녀는 사건 이후 일손을 놓고 있으며 현재까지 언어·후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범인 존 병장은 1995년 1월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995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의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3)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 씨 택시강도사건

1993년 12월 16일 0시 15분경 파주시 에드워드 미군부대 앞에서 한창열 씨의 영업택시에 미군 2명이 승차했다. 미군 더프와 햄은 미리 범행을 모의한 후 차량에 승차, 한씨의 목을 칼로 찔렀다. 한씨는 폭 4cm, 깊이 9.5cm의 자상을 입었고 네번쩨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부 신경이 부분 파열되는 등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강도사건으로 한씨는 국립의료원에서 노동력 상실률 76%의 장애 진단을 받아 평생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여론이 크게 번지자 미군당국은 1994년 1월 4일 1만달러를 치료비로 선지급하였다.

더프와 햄은 1994년 11월 11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중이다.

한씨는 2억 5,600만원을 국가배상 신청하였고 배상심의회에서 1억 2,133만 9,993원의 배상금을 판정해 미군당국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한국국립의료원의 장애진단결과(노동력 상실률 76%)를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내 병원에서 재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 배상사무소는 한국국가배상심의회 판정액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4,700여 만원의 배상을 결정해서 피해자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자의 노동력 상실율을 26%만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상금 산정에 대한 의견'을 주한미군배상사무소에 1995년 10월 23일 전달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서류수령조차 거부하며 "마음대로 해라. 배상금을 기일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미재무성에 귀속되니 받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해자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배상액을 수령했다. 그 동안 병원비와 약값, 향후 치료비도 엄청났지만 그나마도 받지 않으면 배상받을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생활고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은 한씨는 기진맥

진한 상태였다.

한씨는 현재 계속되는 목 주변의 통증으로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4) 미현병대의 정양환 씨 강제연행 사건

1994년 1월 28일 주한미군 전용택시(일명 아리랑택시) 운전기사 정양환 씨가 미군현병 4명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씨는 이 날 오전 한남동 한남빌리지 앞길에서 해리슨 상병과 차 선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뒤 미8군 영내에 들어갔다가 미군병사를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었다. 정씨에 따르면 한남빌리지 뒷문으로 빠져나오던 중 너비 3m의 좁은 골목길 반대쪽에서 오던 해리슨 상병의 차와 마주쳐 약간의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저 서로 운전석에 앉아 한두 마디 말을 건넸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해리슨 상병은 현병대에 가서 정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 신고했고 미현병대는 손님을 태우고 미군영내로 들어온 정씨에게 무조건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던 것이다.

4시간 조사과정 내내 정씨에게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정씨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미군측은 정씨를 석방했다. 잉글리시 미8군 현병사령관은 정씨를 석방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해리슨 상병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는 "미군 영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수사권이 없다"며 정보입수 차원에서 정보과 형사 1명만을 미현병대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1994년 3월 4일 한국검찰은 재판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씨는 1994년 5월 국가와 와인더, 해리슨 상병을 상대

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미군부대에 보낸 소장은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8월 와일더와 해리슨의 부대장인 알 엘 볼드윈(Colonel R. L. Baldwin)을 수송달자로 특별송달하였다. 그러나 미군사령부 법무 관실의 변호사는 두 사람이 서류를 받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판사에게 연락했다. 정씨는 미군들에 대한 송달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을 상대로 두 사람이 출국하였는지, 출국하였다면 그 사유에 대해 사실조회 촉탁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법원은 10월 중순 영문사실 조회서를 첨부하여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송달하였으나 '특별송달 불능지역'이라는 이유로 되돌아왔다. 법원은 다시 11월 집달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촉탁하였으나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라면서 정문 경비원들이 집달관의 출입을 막아 송달되지 않았다. 집달관이 유치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경비원들의 수령거부로 실패하였다. 경비원들은 수송달자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집달관의 요청조차 거부하였다. 이에 집달관은 수송달자와 직접 통화하기 위하여 미군사령부 내의 안내전화에 문의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결국 해당 미군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1995년 9월 16일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5) 존스 중사의 박양식 씨 폭행사건

1994년 3월 12일 오전 11시경 송탄에서 '파파가방'을 운영하는 박양식 씨는 용산 제17 육군항공단에 근무하는 존스 중사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존스 허면 디 중사는 박씨의 가방가게에 와서 박씨가 판매한 가방이 프랑스제 루이비통이 아닌 가짜 상표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는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

해줄 수는 있으나 가방이 가짜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고유 상표다, 나는 프랑스제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존스 중사는 출입구에 서서 이 집은 가짜 상표만을 파는 집이라며 들어오는 손님들을 막아섰다. 이에 박씨가 항의하자 박씨의 입에 손을 넣어 찢으려 하며 폭행하였다.

이에 박양식 씨는 수원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3,292만 1,600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배상을 청구한 지 1년 만인 1995년 3월에서야 미 배상사무소로부터 치료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9만 2,190원의 배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223만 7,300원과도 견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이에 박씨는 미 배상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경위를 알아보았다. 면담자로 나온 배상사무소 법무관은 박양식 씨가 미군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박씨가 입은 상해는 자해에 의한 것이라는 엉뚱한 말을 하였다. 박씨에게 70%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9만 2190원을 결정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씨는 당시 목격자도 있고 한국경찰의 조서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으나 법무관은 '한국경찰의 조서나 당신 말은 믿을 수 없다. 귀찮게 하지 마라. 당신이 불쌍해서 배상하는 것인데 받기 싫으면 그만두라' 등 고압적 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박씨는 너무도 억울하여 미군당국이 제시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폭행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현행 지위협정으로는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다.

(6) 재심청구한 이영직 씨

1994년 10월 17일 새벽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이씨는 동두천시 보산동 횡단보도 앞에서 미군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척추를

크게 다쳤다. 이씨는 미군들이 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희롱을 하자 이에 항의하다가 몰매를 맞은 것이다. 이씨는 당장 치료를 받지 못했다. 치료비 부담이 그에게 너무 커기 때문이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이씨는 6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40%의 장애진단으로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몸뿐이었다. 이씨를 폭행한 미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씨는 1994년 11월 1억 4천여 만원을 배상신청하였고 배상심의회에서는 8,100만원을 재산정하여 미 배상사무소에 보냈다. 이에 미군측은 치료비는커녕 약값도 안되는 배상금 221만원을 수령하라고 통보했다. 왜 배상금의 액수가 그렇게 책정되었는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없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미군은 다시 1995년 12월 1일 수령인의 거부로 배상금이 미재무성에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왔다.

그 해 겨울 참다못한 이씨는 동두천시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13일 간 농성을 벌였다. 동두천 주민들의 호응으로 사안이 확대되고, 여론이 미군측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1996년 1월 12일 미군당국은 한국법 무부의 산정기준을 고려해 배상금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이씨에게 통보해왔다.

결국 이씨는 1996년 10월에 미 배상사무소의 재심사로 결정된 2,3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7) 뮤니크 에릭 스티븐의 이기순 씨 살인사건

1996년 9월 7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이기순 씨가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예리한 칼로 목을 자른 잔인성과 사건장소가 미군기지 인근이라는 점, 군화 발자욱 등으로

미군의 소행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범인은 미 제2사단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경찰에 의해 9월 11일 검거되었다. 뮤니크 이병은 7일 새벽 4시 30분경 술에 취해 이씨의 샛방에 찾아갔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한테 면박을 당하였다. 뮤니크 이병은 화가 나서 이씨의 얼굴을 한 대 때려 실신시킨 후 머리를 잡고 흉기로 목을 세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뮤니크 이병은 1996년 11월 11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12월 27일 첫 재판을 받았다. 1997년 1월 16일 공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뮤니크 이병은 항소하여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이씨 유족들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1억 7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배상심의회에서는 9천만원을 산정하여 미 배상사무소에 전달하였다. 1997년 3월 28일 미군측은 이기순 씨 유족에게 7,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통보하였다.

다.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사정하고 미군당국이 최종검토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서 피해자가 만족하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재판서류를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이들의 재판정 출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정양환 씨의 경우는 위의 문제점을 상세히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과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해서 배상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역시 문제이다. 가해미군이나 고용원이 기지 내에 사유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본국으로 이미 출국했을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가 불확실하다.

본 협정 제23조 9항 (나)는 아래와 같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
거한 강제집행에 따른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
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경매대상이 될 만큼 값이 나가는 사유동산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고, 동산을 경매한다 해도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렵다. 또 미군당
국이 동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되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는 규정이어서 동산이 확실히 우리 당국에 넘어오는지도 불투명하
다. 현행 지위협정에 의하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에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선 미군이나 고용원의 법정출석을 보장하고 재판서류의
송달절차 등 우리의 민사소송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을 받은 후의 집행절차도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미
군이나 고용원의 재산 중 거의 유일하게 실효성이 있어 강제집행 대
상이 될 수 있는 급여(보수)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반드시 규정
하여야 한다.

<1959년 서독 보충협정>의 경우 파견국의 군인이나 고용원에게 지
급되는 보수는 독일법원에 의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제34조 3항).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수가
독일정부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독일법의 범위 내에서 보수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보수가 독일정부에 의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파견국 군당국은 독일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견국 관계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보수가 독일정
부에 의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파견국 군당국은 독일 집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견국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 보수
를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견국의 관련법이 상기절차를 허용하
지 않을 경우 파견국 군당국은 판결, 결정, 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독일
집행당국의 협조요청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5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 <서독 보충협정>과 같았다면 위에서 살
펴본 여러 사례와 같이 억울한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서
독 보충협정>은 비형사사건에 관한 소장과 서류 및 법원명령서 등의
전달(제32조), 판결과 결정 및 명령의 집행(제34조), 차압(제35조), 영장 등
의 송달(제36조), 법정 및 기타 당국에의 출두(제37조), 정보의 공개(제38
조) 등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규칙을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제34조는,
파견국 군당국은 동일 법원 및 기타 당국이 행한 비형사사건에서 선고
된 판결, 결정, 명령 및 해결의 복종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제37조는 파견국의 군인이나 군속
이 독일 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출두하도록 소환되는 경우 파견국 당국
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일법상
출석이 강제되는 한 법원출두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3. 각국이 소유하는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관한 손해

가. 규정내용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

7) 최승환,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
제법연구』, 4권 2호 별책, 1997, p. 118.

중에 일어난 경우와 다른 당사국이 소유하고 그 군대가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는 다른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본 협정 제23조 1항).

군용차량이나 군함, 군용기 등에 공무수행중(훈련중)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손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용재산이 아닌 기타 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배상금에 대해서 공무집행중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손해액을 분담하며 손해금액이 1,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다른 당사국의 군인이나 고용원이 차량이나 선박, 비행기의 운행 또는 정비, 관리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손해금이 1,400달러 이하인 경우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액이 1,400달러 이하인지 아니면 초과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손해액이 1,4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1,400달러 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상대국의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⁸⁾

8) 장주영, 「민사청구권 조항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p. 29.

4. 적용범위

청구권조항은 미군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중 또는 공무집행과 관계 없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군 및 고용원의 가족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그 가족을 직접 상대로 해서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한 미군과 고용원의 가족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나 그의 가족은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미군이나 고용원의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군이나 고용원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협정의 청구권조항에 미군 및 고용원의 가족이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절차를 규정하여 범죄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미군가족에게 폭행당한 이규만 씨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이규만 씨는 1994년 5월 25일 밤 9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비바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미군과 고용원의 아들인 지미 걸리(19세, 학생)와 에릭 라이스(15세, 학생)에게 주먹과 맥주 깡통으로 얻어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들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정부로부터 약식 기소되

어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는 배상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해자나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실제로 배상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에 민사청구를 포기하게 되었다.

VI. 그 밖의 주요조항의 법적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지위협정 대상자의 인적 범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서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초청계약자로 되어 있다.

먼저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문제이다.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협정 제1조).

<나토협정>은 배우자와 부양받고 있는 자녀에 국한하고 있고, <서독 보충협정>은 부양 및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기타 친척’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기타 친척’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친척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도 없으므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생계비 산출의 근거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남발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나토협정>과 같이 배우자와 그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에 국한시키든지, 최소한 <미일협정>에서처럼 ‘기타 친척’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초청계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 조항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에 복종한다. 다만 주둔군의 임

무수행에 기여하는 그들의 역할을 감안하여 그들이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체포, 구금, 자유형의 집행, 피고인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나토협정>이나 <미일협정>에도 없는 형사절차상의 특권으로 유독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서만 넓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초청계약자에 대하여 형사절차상의 특권까지 부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셋째로 군속과 가족에 대하여 미군당국의 재판권이 없는 점이다.

1960년 미연방 대법원은 평화시에는 미군당국이 민간인인 군속과 가족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 이후 미군당국은 더 이상 민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후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서는 미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모든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협정 본문에서 군속과 가족을 명기한 것은 자국민에 대하여 가급적 많은 재판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 하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미군과 군속의 가족들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행정적, 징계적 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 미군측에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에게 재판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미군당국이나 한국이 둘 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미군 군속이나 그 가족은 본국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나 얼마나 이송이 될지,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가 의문이다. 1988년 미군범죄수사단 단장의 아들(17세)이 임산부를 폭행, 희롱했으나 군인가족이라는 이유로 미군관할로 인도되었고, 그 뒤 사건처리는 흐지부지되었다.

<나토협정>과 <미일협정>에서는 인적 범위를 “군법에 따르는 자”라 하였고, 그 결과 군속과 가족의 경우에는 접수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적용대상자도 “군법에 따르는 자”로 개정하고 군속과 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법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검사의 상소권 제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미군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무죄석방에 대하여 독자적 상소권이 없다. 한 나라의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상소를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아예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3. 영어본 우선하는 본 협정 31조

본 협정 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두 나라의 협정이 동등하게 정본이라고 하면서도 해석상의 차이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무조건 영어본을 우선함으로써 주권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⁹⁾ 이는 마치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후 선포했던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사령부 포고문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제5조의 치욕스런 문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듯하다.

미국 태평양방면 육군사령부 제5조

군정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같지 않을 때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해방된 지 반백년이 지났지만 주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991년 개정된 양해사항 제26조에는 “양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본 협정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 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9) <런던협정>은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체약 당사국간의 모든 의견 차이는…체약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 명백한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의견 차이는 이를 북대서양조약이사회에 부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 보충협정>이나 <미일협정>에서도 <한미행정협정>의 경우와 같은 차등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 도서출판 민, 1995, p. 63.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사항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위의 양해사항은 본 협정의 하위개념으로 본 협정을 강제할 효력이 사실상 없다. 서로 상충하는 내용을 그대로 1991년 개정안에 담고 있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례 1¹⁰⁾

미공군 6314보급중대 소속 콕스 하사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로 재판정에 선 미군이다.

그는 1967년 2월 20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엄경순 씨 집에 불을 지르고 택시로 달아나다 택시운전사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국검찰은 수사종료 후 <방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콕스를 기소했으나 지위협정의 규정대로 콕스를 미당국에 넘겨 미군측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콕스는 재판절차가 진행중인데도 구금은 커녕 부대 밖으로 자유로이 외출했으며 심지어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신장리(현 평택시 신장동) 사람들 몰살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미군당국은 콕스의 신병을 구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군측은 본 협정 제22조 5항에 명기된 피의자의 ‘구금’의 원문 영어표기 Custody를 미국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즉 미군측은 Custody가 반드시 구금시설 안에 수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

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출입을 금지하여 자유행동을 제한하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측은 미국 법과대학에서 사용하는 법률사전까지 인용하여 Custody는 일정한 시설에 감금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미군측은 본 협정 31조를 인용, 강조하였고 방화범 콕스는 재판 진행중에도 자유롭게 나와 증인들을 협박하고 다녔다.

그 해 5월 26일 불탄 집 주인인 김원구 씨는 검찰의 증인신청으로 법정에 나와 “미군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는 콕스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공판에 나와 불리한 증언을 했던 신장리 사람들을 몰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왔다”고 폭로하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콕스는 “폭력은 인정하나 방화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였고 결국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방화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콕스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난 1998년 1월 16일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허주연(22) 씨가 미군 핸릭스 티모시 제롬 병장에게 살해당하였다. 핸릭스는 허씨가 “담배를 많이 피우고 부대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한 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허씨의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핸릭스가 허씨의 방에서 나가는 것을 본 목격자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후 미군측에 구금(?)되어 있는 핸릭스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허씨를 구타했을 뿐 살인, 방화는 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잡아떼고 있다.

기지촌 주민들이 제2의 콕스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불안한 오늘이다.

10) 오연호, *op. cit.*, p. 242